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08. 04.

개정 2015. 11. 10.

개정 2016. 03. 10.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12. 07.

개정 2018. 10.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5.>

1. “종사경력 증명서”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말한다.
2.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기관”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
3. “종사경력 확인단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신청서의 제출) ①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종사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발급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

업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문화 예술기획업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 증명 서류를 말함) <개정 2015.11.10.>
2.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서류
3. 대중문화예술인이 작성한 구두계약 확인서(별지 서식 제8호, 해당 대중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3.10.>
4. 외국 정부가 발급한 소득 증명서류(외국정부가 발급한 소득증명서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발급사실 확인 및 번역 공증된 서류를 말함) <신설 2015.11.10.>
5. 종사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 한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정 2015.11.10.>
6. 그 밖에 제1항 제1~4호에 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15.11.10.>

② 발급신청인은 종사경력의 증명을 요하는 기간(월 단위를 말한다)을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경력기간의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

1.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한다) 및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소득 증명 <개정 2015.11.10.>
2.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한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이 발급한 법인소득 증명 <개정 2015.11.10.>
3. 근로소득 원천징수자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한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이 발급한 근로소득 증명 <개정 2015.11.10.>

4. <삭제 2018.10.25.>

5.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것에 한한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내 기관이 발행한 사회보험사업장 가입 증명서류(국내기관이 발행한 사회보험사업장가입 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취득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말함) <신설 2015.11.10.>

③ 제1항 제5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 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발급신청인은 제2항의 기간에 대한 종사경력 확인을 받고자 하는 종사경력 확인단체를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7.12.07.>

제4조(신청서의 접수) ① 진흥원은 제3조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대장에 기재한다. <개정 2018.10.25.>

② 진흥원은 제3조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인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으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종사경력 확인요청)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의 증명을 요하는 기간(월 단위를 말한다)에 대해서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30일의 기한 내에 종사경력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별지 제3호 서식의 종사경력 확인요청서에 따른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7.>

② 진흥원은 제1항의 확인요청서에 발급신청인이 제출한 제3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한다.

③ 제1항의 종사경력 확인단체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발급신청인이 기재한 단체로 한다. <개정 2017.12.07.>

제6조(확인실비의 수납대행) ① 진흥원은 발급신청인으로부터 종사경력 확인 단체가 종사경력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실비의 수납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실비 수납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할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발행한 지로(인터넷 지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며, 진흥원은 지로납부영수증을 제5조 제1항의 확인요청서에 첨부한다.

③ 제1항의 확인실비의 수납대상 및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확인서의 제출) ① 제5조 제1항의 확인 요청 또는 제12조 제1항의

재요청을 받은 종사경력 확인단체는 확인요청서 또는 재요청서에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종사경력 확인서를 진흥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제5조 제2항의 종사경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종사경력 확인단체에 설치된 종사경력 확인위원회의 회의록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개정 2017.12.07.> <개정 2018.10.25.>

1.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서 종사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개정 2015.11.10.> <삭제 2017.12.07.> <개정 2018.10.25.>
3. <삭제 2015.11.10.>

③ 제5조 제1항의 확인 요청을 받은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확인서에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진흥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6.12.29.>

제8조(다른 확인단체에 확인요청)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 확인단체(이하 “1차 확인단체”라 한다)가 제5조 제1항의 기한 내에 종사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제3항에 따라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발급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발급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제5조 제1항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별지 제3호 서식의 종사경력 확인요청서에 따른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의 선정은 발급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에는 1차 확인단체로부터 기한 내에 종사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종사경력 확인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1차 확인단체가 제출한 확인서 및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발급신청인은 제1항의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발행한 확인실비지도를 납부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에 지도납부영수증을 첨부한다.

- 제9조(심사위원회)** ① 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종사경력증명서발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개정 2018.10.25.>
-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문화산업관련전문가, 4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자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진흥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25.>
- ④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진흥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심사)**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여부에 관한 의결을 받기 위해서 발급신청인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7.12.07.> <개정 2018.10.25.>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을 한다. <개정 2018.10.25.>
1.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개정 2018.10.25.>
 2. 종사경력 확인서 보완
 3. 종사경력 증명서 신청서 반려 <개정 2018.10.25.>

제11조(증명서류의 발급) ① 진흥원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종사경력이 확인되어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을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 발급신청인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의 대중문화예

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에 따른다)를 발급한다. <개정 2018.10.25.>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시 발급신청인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지체 없이 등록증 사본을 진흥원에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한다. <개정 2018.10.25.>

제12조(확인 재요청) ① 진흥원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추가적인 종사경력 확인이 필요하여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종사경력 확인서 보완이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종사경력 확인서를 제출한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30일의 기한 내에 종사경력 확인을 해 줄 것을 재요청(별지 제6호 서식의 종사경력확인 재요청서에 따른다)한다.

② 제1항의 재요청시 확인서를 제출한 종사경력 확인단체(이하 “제1차 확인단체”라 한다)가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단체에게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하지 않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발급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그 발급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제5조 제1항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의 선정은 발급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서에는 제1차 확인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가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결을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1차 확인단체가 제출한 확인서 및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종사경력 확인 단체에게 종사경력 확인을 요청을 할 경우, 발급신청인은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발행한 확인실비 지로를 납부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서에 지로납부영수증을 첨부한다. <개정 2017.12.07.>

제13조(신청서의 반려) ① 진흥원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 반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설명하고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반려한다. <개정 2018.10.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반려 받은 발급신청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기한의 경과 등으로 새로운 종사경력 확인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기존업자의 증명서류발급 특례)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발급신청인은 이 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른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일자의 2개월 전까지 진흥원에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첨부 서류에는 이 법의 시행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이고 이 법의 시행당시 영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한다)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종사경력의 증명을 요하는 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④ 진흥원은 제1항의 신청서에 제3조 제1항 제1호(사업장국민연금 보험료 2014년도 7월분 납부확인서,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014년도 7월분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고객용 보험료 2014년도 7월분 납부내역 카드, 산재보험 고객용 보험료 2014년도 7월분 납부내역 카드, 2014년도 3분기(7~9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및 제2항(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서 개업일이 2014년 7월 29일 이전일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사경력 확인단체에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상정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종사경력 확인단체에 종사경력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한 내에 확인을 해 줄 것과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⑥ 기존업자에게 발급하는 제11조 제1항의 종사경력 증명서류에는 대중 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⑦ 진흥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일자의 1개월 전까지 기존업자에 대한 제11조 제1항의 종사경력 증명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6조 제3항에 따른 확인실비의 수납대상 및 금액

수납대상	금액
확인요청	25,000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시: 준영구 ·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반려 시 :즉시 파기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종사경력사항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운영(「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소득증명서류 확인서) 발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확인지정단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 위탁기관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위탁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확인지정단체: 신청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 법정교육 위탁기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 운영
- 실태조사 위탁기관: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실시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확인지정단체: 신청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후 즉시 파기
- 법정교육 및 실태조사 위탁기관: 이용 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시 파기

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및 법정교육 이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출 증빙서류 안내>

※ 각 종사경력별로 종사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자 경력인 경우 / * 업체의 직원, 법인의 대표 포함

1. 종사한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폐업인 경우 폐쇄사항 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실확인서
2. 다음 서류 중 1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취득확인서

※ (참고) 확인방법

1. 업체의 업무영역에 기획업 관련 업무(연예인 대리, 연예 매니지먼트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신청인의 해당업체 근무여부 및 근무기간을 확인합니다.

②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경력인 경우

1. 운영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
2.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참고) 확인방법

1. 업체의 업무영역에 기획업 관련 업무(연예인 대리, 연예 매니지먼트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인이 해당 업체의 대표였는지 확인합니다.
3. 해당기간 동안 업체의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업체의 운영 사실을 확인합니다.

③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경력인 경우 / * ①근로소득자의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

1. 해당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폐업인 경우 폐쇄사항 포함)
2.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납부내역증명(국세 납세사실증명)

※ (참고) 확인방법

1. 업체의 업무영역에 기획업 관련 업무(연예인 대리, 연예 매니지먼트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인이 해당 업체의 대표였는지 확인합니다.
3. 해당기간 동안 업체의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업체의 운영 사실을 확인합니다.

④ 상기의 ①~③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 대중문화예술인과 직접 매니저 계약, 건강보험 가입을 안 한 경우 등

1. 대중문화예술 기획업무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성명과 업무가 명시된 기사, 본인 성명과 업무가 명시된 CD 크레딧,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서(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였음을 확인해주는 확인서) 등의 서면자료
2. 상기 대중문화예술 기획업무를 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였음 증명 하는 증빙(급여 입금내역 등)

※ (참고) 확인방법

1. 제출한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종사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위 임 장

위 임 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수 임 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 붙임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인 및 수임인의 인적사항은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u>수임인의 신분증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u>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시 : 1년
-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반려 시 : 즉시 파기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목적

- 위임인(신청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에 대한 수임사실 확인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임인(신청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수임인 : (서명 또는 인)

종사경력 보증서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종사경력 확인 기간

종사경력 보증서 작성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종사 경력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대상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 수집·이용목적(보증서처리, 사후관리 등) ○보유·이용기간(5년)
 상기내용에 대하여 동의함 동의안함(체크요망)
 동의할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처리불가)이 있을 수 있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사경력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종사경력보증서 작성자 성 명 _____(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중

붙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4년 이상의 종사경력보증서 작성자의 종사경력 증명서류

종 사 경 력 보 증 사 유 및 근 거			
근 무 기 간 ()안은 실제근무기간	근무회사명	보증사유	근거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증빙(근거) 목록		
첨부번호	첨부물 목록 제목	비고

작성 방법
1. 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 하십시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4년 이상의 2인 이상이 각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보증사유 및 근거를 적시하여야 합니다. 3. "근무기간"란에는 실제 종사경력 근무기간으로 반드시 연월까지 기재주시기 바랍니다. 4. 한글파일로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하거나, 자필로 작성 시 정자로 기재 하십시오.

종사경력확인 재요청서

□ _____ 단체장 귀중

□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 연 락 처 : _____

연번	종사업체명	종사경력 확인 요청기간	종사개월 수	비고
총 종사경력 확인 요청기간		()개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귀 단체에 종사경력 확인을 재요청합니다.(회신기한 : 월 일까지)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붙 임 :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신청서 1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1. 발급번호 : 제 호
2. 성명 :
3. 생년월일 :
4. 종사경력기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를 (발급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1. 발급번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
4. 상호(법인명) :
5. 개업일 :
6. 사무소 소재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연락처 :

구 두 계 약 확 인 서

□ 종사경력 증명을 위한 구두계약 사실 확인내용

1. 인적사항			
신청인 (계약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		휴대전화
대중문화 예술인 (계약상대자)	성명 :	(인감도장 날인)	생년월일
	주소 :		휴대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대중문화예술인(본인)] <input type="radio"/> 수집대상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input type="radio"/> 수집·이용목적(구두계약 확인서 처리 등) <input type="radio"/> 보유·이용기간(5년) 상기내용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요망) <small>☞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구두계약서 확인서의 처리 불가 할 수 있음</small>		

2. 구두계약 사실 주요내용	
계약기간 (년/월)	-
계약기간 중 담당업무 및 활동자료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 증명을 위한 “구두 계약 확인서”를 제출하며 위의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증명하고 구두 계약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발생하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약약합니다.

첨부 : 대중문화예술인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계약기간 중 활동 자료

년 월 일

작성 방법
1. 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합니다. 2. “주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약기간”란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계약한 기간으로 년, 월을 기재합니다. 4. “계약기간 중 활동자료”란에는 계약기간에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니지먼트영역, 수익배분 등) 등을 기재한 후 첨부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중문화예술인”란에는 대중문화예술인 기재 또는 확인하여 인감도장(용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 확인용)을 날인하여야 합니다.